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주거급여의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함(안 제11조제1항).
-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제23조의2 등).
- 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우대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 관리비를 주거급여의 지원 항목에 추가한 안 제11조는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¹⁾과 연계된 조문으로써 동 개정안의 시행

1)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관리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26년 4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관리비 및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8조의2(관리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관리비(이하 “관리비”라 한다)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② 관리비의 보장범위 및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③ 관리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일²⁾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III. 관계기관 의견

-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는 안 제27조의4(의사무능력자의 급여 관리)에 대하여 이하 사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민법」상의 권리능력 기본원칙 및 후견제도³⁾와 충돌할 우려가 있음.⁴⁾

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2)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② 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 4) 수급자가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업무 범위와 중복될 수 있고,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 후견에 대한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 체결 없이도 급여관리자에게 후견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급여관리자 제도는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는 특정후견 제도의 신청권자, 목적과 대상, 권한 범위 등이 유사하고, 특정후견을 통한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별도로 급여관리자 제도를 규율할 실익이 불분명함.
- 급여관리자의 급여 관리로 인하여 수급자의 급여 관리 권한이 중대하게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급여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 범위를 모두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급여 관리”의 의미를 법률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질 소지가 있음.⁵⁾

(전문위원 윤 상 열)

5) ‘급여 관리’가 민법상 ‘대리’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고, 관리의 범위가 재산(급여)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개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재산의 보존·이용·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실상법률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이 불명확함.